

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3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4. .
- 나. 제안자 : 이 재 병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4. 4. 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4. 23.(제2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이 재 병 의원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헌 기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를 통한 인천시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의 부실, 재원의 부족, 총괄 조직 부재 등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,
- 주거복지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고 시의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대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거약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(안 제2조)
-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(안 제3조)
-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,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안 제4조)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대상인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(안 제7조)
-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(안 제8조~제13조)
-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상담·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,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~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우선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 주거약자 등에 대한 현황 및 주거욕구 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규모와 기능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주거조사 실태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마련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다소 유예하거나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4명, 찬성 : 4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거복지”란 시민의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주거약자 등”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 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
 - 다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

지원 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.

제2장 주거복지사업

제4조(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.
2.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.
3.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.
4.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.
5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.
6.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.
8. 주거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.
9.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.

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약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주거복지사업 시행계획(이하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
 2.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 사항
 3.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주거실태조사) ① 시장은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,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구특성
 2. 주택의 유형, 규모 및 점유형태
 3. 주택의 시설 및 설비
 4.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
 5. 주택가격 및 임대료
 6.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
 7.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.
-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, 조사목적 및 내용,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택법,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
- ⑤ 주거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2. 주거약자 등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
3.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
4.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 등
5.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3장 주거복지위원회

제8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과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, 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회 기능을 「인천광역시 주택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,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2. 시민단체 대표, 전문가 및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2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
3.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

제14조(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)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거복지사업의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
2.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
3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
4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5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
6.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
7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

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8조(위탁계약 취소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

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주거복지사업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